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92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4976	임미애의원	2024.10.28.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5446	조은희의원	2024.11.11.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9051	강경숙의원	2025. 3.18.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22.)는 위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
(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가정 내”를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계속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3항 단서”로 한다.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u>가정 내</u>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 <u>위기</u> <u>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u> ----- ----- ----- ----- -----.
<u><신 설></u>	5의2. “ <u>고립·은둔 청소년</u> ”이란 <u>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의2(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u>

<신 설>

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신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금전, 물품-----
-----.

③ -----

-----.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
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
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
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
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

	<u>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⑥ <u>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⑦ <u>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4</u>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생략)	<u>제18조의5</u>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음)
<u>제18조의5</u>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략)	<u>제18조의6</u>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현행 제18조의5와 같음)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u>계속 이용</u>) <u><신설></u>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u>이용</u>) ① <u>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 가정 밖</u>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u>제1항 단서</u>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u>제3항 단서</u>----- ----- ----- ----- ----- ----- -----.
--	---